

의안 번호	2260	[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심 사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5. 2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5. 2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5. 14.(화)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예산실장 김영환)

가. 제안이유

- 본청 국 신설, 과 개편, 사업소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조절하고,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(안 제4조 별표 3)
 - 1. 총 계 : 713명(변동없음)
 - 2. 일반직 : 710명(변동없음)
 - 가) 4급 : 6명 → 7명(증 1명)
 - 본청 : 4명 → 5명(증 1명)
 - 나) 5급 : 45명(변동없음)
 - 본청 : 26명 → 25명(감 1명)
 - 사업소 : 1명 → 2명(증 1명)

다) 6급 이하 : 658명 → 657명(감 1명)

다. 근거법규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
○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청 국 신설, 과 개편, 사업소 신설 등 행정 기구 개편에 따른 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,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3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

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 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 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